

대학혁신사업 관리 운영 규정

제정 : 2019. 03. 01.

개정 : 2020. 03. 06.

담당 : 혁신사업단(950-4329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용어의 정의)	제3조(적용범위)	제4조(조직)
제5조(대학혁신사업 운영위원회)	제5조의2(대학혁신사업 영역별 사업실무자협의회)	제6조(사업 관리)	제7조(행정 지원)
제8조(성과 관리 및 자체 평가)	제8조의2(자체평가위원회)	제9조(비교과프로그램 관리)	제10조(외부평가)
제12조(세부사항)	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의 「대학혁신지원사업」(이하 “혁신사업”이라 함)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함)의 혁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전략과제”라 함은 혁신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별(교육·산학협력·기타) 세부 프로그램을 말한다.
2. “성과지표”라 함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 전략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평가 준거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본교의 기관 및 부서와 이 규정에 따른 제위원회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
제4조(조직) ① 혁신사업단은 단장을 두고, 총괄위원장을 임명하여 대학의 모든 혁신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 운영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.

② 혁신사업 관리 및 실무 분담은 사업 관리, 행정지원, 성과 관리, 비교과프로그램 관리에 대해 각각 담당자 또는 관리자를 배치하고 혁신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.

제5조(대학혁신사업 운영위원회) ① 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사업 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라 함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명의 교무위원급 내부위원과 1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- ③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 1. 대학 비전과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대학혁신사업 방향 및 전략 수립
 2. 전략과제 실행계획 수립 심의
 3.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및 조정
 4. 사업 성과관리
 5. 월별 사업보고 및 계획에 관한 정기회의 운영
 6. 차년도 혁신사업 운영계획
 7. 기타 사업추진 및 운영 관리에 관련된 중요 사항

제5조의2(대학혁신사업 영역별 사업실무자협의회) ① 혁신사업의 시행 정도를 자체 점검하고 사업 협력과 공유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역별 사업실무자협의회(이하 '실무자협의회')를 둔다.

② 실무자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개 영역을 대표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팀장이 된다. 또한 4개 영역별로 각각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위원이 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④ 실무자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.

제6조(사업 관리) ① 혁신사업의 사업관리부서는 대학혁신사업단으로 하고 사업단 실무를 총괄한다.

② 대학혁신사업단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③ 삭제

제7조(행정 지원) ① 혁신사업의 행정 지원은 행정본부가 담당하고 모든 사업비의 집행을 지원한다.

② 행정 지원은 『대학혁신사업 집행 및 관리 기준』(2019.3.1)과 그 외 본교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성과 관리 및 자체평가) ① 혁신사업의 성과 관리 및 자체평가는 평가감사실로 하고 성과 관리 및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혁신사업의 성과관리부서는 반기별 사업성과를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를 관리한다.

③ 성과관리는 연차평가, 중간평가, 종합평가로 나눈다.

④ 혁신사업의 성과관리 및 연차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⑤ 평가감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
2. 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

제8조의2(자체평가위원회) ① 혁신사업의 목표 달성 및 성과·산출물의 질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평가의 투명성·효과성 확보를 위해 혁신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교내 구성원 3명, 교외위원 2명 이상, 학생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감사실장이 된다.

- ③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-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 점검을 위해 연 1회 이상 자체평가 및 환류를 실시한다.

제9조(비교과프로그램 관리) ① 혁신사업의 비교과프로그램은 비교과프로그램 관리자가 총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교과교육위원회를 둔다.

- ② 비교과프로그램 관리자는 비교과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한다.
- ③ 비교과교육위원회 기능은 비교과교육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른다.

제10조(외부평가) 혁신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, 혁신사업 성과 점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 전략과제의 성과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『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』 (교육부, 2019.1.) 및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되,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